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13 선고 2015가합7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7나2532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13 선고 2015가합7061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수호

피고1. 주식회사 B

2. C협동조합

3. D협동조합

4. E협동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박은석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예현주, 김병진, 기윤석

변론 종결 2017. 9. 22.

판결 선고 2017. 10.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 D협동조합(이하 '피고 D조합'이라 한다), E협동조합(이하 '피고 E조합'이라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30. 접수 제15451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같은 법원 2015. 9. 30. 접수 제1545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

1. 피고 B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085,151,268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85,151,26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5. 1. 24.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G는 F의 설립에 참여한 주주 중 일부인데, 현재 원고는 F의 사내이사, G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B은 아파트부지 및 택지조성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14. 설립된 회사이다.

나. F은 2005. 4. 21. 공매절차를 통해 대구 달서구 H 임야 61,293m²(이후 이 토지는 I, J, K, L, M,

N 각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중 I을 제외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6. 30.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의 부동산매수대금은 원고, G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출자금과 ○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출금으로 마련되었다. F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P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인 O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4. 24.부터 2007. 7. 31.까지 총 6회에 걸쳐 F에게 합계 281,647,97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F로부터 각각의 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6장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1	2006. 4. 24.	160,000,000	월 2%	정함 없음
2	2007. 1. 31.	25,000,000	월 2%	2007. 7. 31.(다만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 여부에 따라 기한 신축 가능)
3	2007. 4. 30.	50,147,970	월 3%	정함 없음
4	2007. 5. 1.	10,000,000	월 2%	정함 없음
5	2007. 7. 5.	20,000,000	월 2%	2007. ○.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 여부에 따라 기한 단축·연장 가능)
6	2007. 7. 31.	16,500,000	월 2%	2007. ○.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 여부에 따라 기한 단축·연장 가능)
합계	281,647,970			

라. 이 사건 토지의 처분시도와 매매대금의 처리계획

- 1) F은 2014. 6. 19. 이 사건 토지 및 Q 토지 중 일부를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10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수령하고 2014. 11. 30.(사업승인 후 신탁등기시) 잔금 9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2) 이후 F은 2014. 11. 11.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이사회에서 'R의 2014. 11. 30.자 잔금 입금 시 지출에 대한 안건 : R가 2014. 11. 30. 지급할 예정인 잔금은 별도의 운전자금상환스케줄 기재

대금 45억 2,240만 원과 국세, 지방세, 압류 관련, 압구건설, 회계사 기장료 등 19억 6,000만 원
합계 66억 원에 순차 지출하고, 나머지 24억 원 중에서 S 이사 지급액 6억 원과 원고 정산금 잔액 9억
원을 다음 순서로 지출하며, 나머지 9억 5,000만 원을 G 대표이사의 차입금 정산 등으로 지출한다'는
등의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무렵 F 및 R와 사이에 'R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할 예정인
잔금 90억 원 중 9억 원을 R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F은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 F, G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90억 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가) 1순위 : 별도의 운전자금상환스케줄 기재 대금 및 국세, 지방세, 압류 관련, 압구건설, 회계사
기장료 등으로 66억 원

나) 2순위 : S 이사에 대한 6억 원, 원고에 대한 9억 원

다) 3순위 : G 대표이사에 대한 9억 5,000만 원

2) 원고에게 지급하는 9억 원은 원고가 F에게 대여한 돈 311,647,970원과 원고가 소유한 주식의
매매대금 588,352,030원으로 구분한다.

3) 원고는 9억 원을 지급받는 즉시 G 또는 F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에게 지급하는 9억 원의 지급방법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R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 R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F과 G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

4) 그러나 R가 약정한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F과 R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결국 해제되었고, P이 2015.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여 공매기일이 2015. 10. 1.로 지정되었다.

마. F의 이 사건 토지 처분 등

1) F은 2015. 9.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30. 접수 제1545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2) 이어서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30. 접수 제154512호로, 피고 C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2억 4천만 원의, 피고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피고 E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이후 2015. 10. 7. F에게 원고가 대여한 위 다.항 기재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F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이하 '대여금 집계 현황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1) 주주 및 이사 외부차입 대여금 집계 현황

1	G	2015. 9.부터 2016년	4,592,000,000	56억 9,540만	102억 8,700만
2	원고	2015. 9.부터 2016년	271,600,000	6억 7,000만	9억 4,160만
3	S	2015. 9.부터 2016년	407,000,000 (지급 200,000,000)	4억 9,000만	6억 9,700만
4	T	2015. 9.부터 2016년	1억 5,200만	4억 2,800만	5억 8,000만
5	U	2015. 9.부터 2016년	1억 7,000만	3억 6,000만	5억 3,000만
합계	55억 6,560만	74억 4,840만	180억 3,560만		

2) 의견

공매자 거듭 4회까지 연기 대안에 따른 대책이 없고 해서 토지 매각에 각 주주 이사 등 조금이라 배분코저 한다. 2015. 10. 1. 공매했다면 외부 차입금이 100억원 이상이라 법원에 공탁될 경우 각 주주들이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정산금 잔액을 안분해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대표이사의 진행방안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위 기초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합계 281,647,970원을 대여한 F의 채권자이다.
- 2) 주위적으로, F의 대표이사인 G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F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F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조합, D조합, E조합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위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F이 원고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원고가 F에게 281,647,970원의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F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원고가 소유하는 F의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출자 내지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 2) 위 돈이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그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F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성립 여부

- 1) 원고는 F에 대하여 281,647,970원의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으므로, 우선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 2)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F에게 6회에 걸쳐서 합계 281,647,970원을 지급하였는바, 먼저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위 돈을 수령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이 사건 합의 당시나 대여금 집계 현황표에 금액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원고의 채권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보면, 위 돈 281,647,970원은 대여금임이 분명하므로, F은 변제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변제기 이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원고가 청구하는 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의 항변과 시효이익포기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항변 원고의 F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은 F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2006. 4. 24.부터 2007. 7. 31.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거나 변제기를 2007. 7. 31. 또는 2007년으로만 정함으로써 그 변제기는 늦어도 2007. 12. 31. 도래하는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3. 3.에 이르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피고들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은 이유 있다.

2) 시효이익포기의 재항변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의 2014. 11. 11.자 이사회 결의와 그 무렵 원고와 F이 한 이 사건 합의, 2015. 10. 7. 원고에게 송부한 대여금 집계 현황표 등을 통하여 F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F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소멸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이어서 소멸시효의 중단은 고려할 여지가 없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만 문제되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F이 2014. 11. 14.자 이사회결의와 그 이후의 이 사건 합의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고의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이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F의 유일한 사업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매각대금의 분배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청산방식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투자자간의 정산의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기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R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F과 G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F의 재산분배책임이 잔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한데서 알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2015. 6. 11.자 F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R의 잔대금 지급이 없으면 재산분배에 관한 기존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원고가 수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1. 11.자 이사회 결의, 이 사건 합의, 2015. 10. 7.자 대여금 집계 현황표 등은 F의 유일한 사업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청산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승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인바, 나아가 F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채권자대위청구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순탁

판사박찬범

판사심웅비

별지